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5조,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1995.12.28 대통령령 제14,841호)제13조, 제21조

- 4. 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 필요

첨부 :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  
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937명”을 “939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마포구의 본청·직 속기관 및 동에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 .....
1. 구분청(구청) : 937명	1. .... : 939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6. 11. 4.

도시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10.2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6.10.25.
  - 다. 상정일자 : 제41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96.11.4)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정수 건설  
관리과장)
  - 가. 제안이유

- 도로법시행령(1996.7.1 대통령령 제 15, 100호)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시 나타난 일부 문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이 96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함.

- 점용료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미만에서 5,000원미만으로 확대.
-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 환급시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방지함.
-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내용 일부 개정(안 별표1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관수 전문위원)

- 동개정 조례안은 1996.7.1 도로법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을 일부 변경하고 동조례 시행상 불합 리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7조 제1항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 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소 액 부징수 금액의 범위가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 이고 안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 할 경우의 처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의 세입구분이 삭제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수입으로 귀속되고,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2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는 현행 제1호 및 제8호에서 정율제로 규정되어 있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어 스양카의 점용료 산정 방식을 제2호에 규정하여 정액제로 개정함으로써 점용료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며, 정율제의 점용료 산출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현행 공시지가에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로 개정하는 것이고, 현행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구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동개정 조례안에서 삭제된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부과 대상이 없어 삭제된 것으로 사료됨.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내용은 자치특정업체에 대한 소급적용의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는 사료되나, 동조례가 개정될때까지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등에 대한 9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유보하라는 96.1.19일자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점용료 부과가 유보된 것으로 동개정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자치구 조례가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그 시행이 중단된다는 것은 다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유용봉 위원) : 의회의 조례안 제출이 너무 늦고 탈자, 오자 등 성의가 부족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음.

○답변요지(건설국장 신동문) :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함. 향후 최선을 다하여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도로법시행령이 금년 7월 1일 개정되었기에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개정을 1월1일부터 소급적용이 해당됩니까?

○답변요지(건설관리과장 김정수) : 서울시 상급조례가 개정된 후 시달되었기에 소급 적용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나 소급 적용 부과는 차질이 없음.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점용료 미부과의 범위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한다는 문구는 점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인지?

○답변요지(건설관리과장 김정수) : 면제의 폭을 좀 넓혀 주는 것임.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의견 : 없음.

10. 기타사항

의안 번호	119
----------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일자 : 1996.10.23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법시행령(1996.7.1 대통령령 제15,100호)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이 '96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함(안 제6조 제3항 제1호)

○점용료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미만에서 5,000원미만으로 확대함(안 제7조 제1항)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 환급시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함(안 제7조 제2항).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표내용 일부개정(안 별표1)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및 송열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구경)에 따라 세분화함(안 별표1 제2호)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에스안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함(안 별표제1호, 제8호)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미만의 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함(안 별표1비고제5호)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의 직경 산출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함(안 별표1 비고제6호)

3. 개정근거

○도로법(1995.12.6 법률 5,025호)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제86조의2

○도로법시행령(1996.7.1 대통령령 제15, 100호) 제26조의2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여부 : 해당없음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  
료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부당이득금의부과·징수”를  
“부당이득금의부과·징수등”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1호중 “건설교통부표준품셈”  
을 “건설표준품셈”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5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  
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  
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중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  
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  
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분납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제3조 관련)

(금액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1. 전주·공중전 화·송 전 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 주		1,350		
	전주와 유사한 것		2,000		
	공중전화		54,200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하수 도관·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송 유관·기 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유 관, 송열관, 작업 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년	85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1,75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3,5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5,25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7,00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8,750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13,100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21,8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어스양카, 기타의 판	직경 3.0m 초과 직경 0.1m 이하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직경 3.0m 초과	길이 1m	1년	30,600					
				1,300					
				2,600					
				5,200					
				7,850					
				10,450					
				13,100					
				19,650					
				32,750					
				45,8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시설안내표지·현수막·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점용) 기타	표시면적 1㎡	1일	300
								1년	88,400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73,6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광고 또는 홍보용 기타의 용도	표시면적 1㎡	1일	300
300									
300									
아 취	도로횡단 기 타	표시면적 1㎡	1년		176,800				
					88,4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인 건축물 4층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 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 을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 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 0075를 곱한 금액
육교상가, 기타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가포판매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 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 소동의 공사 용시설 및 재료, 굴착 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1일	300
	기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 지 제9호의 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 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면적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합계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1,950원→1,900원)

【별표 1】

현 행

1.

점 용 물 의 종 류	
전주·공중전화·송전탑·기타 이 와 유사한 것.	송전탑·변압기·저장고·공동구·전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기타

2.

점용물의종류		직경	점용료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기타 이 와 유 사 한 것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0.1m이하	850	
		0.1m초과 0.2m이하	1,750	
		0.2m초과 0.4m이하	3,500	
		0.4m초과 0.6m이하	5,250	
		0.6m초과 0.8m이하	7,000	
		0.8m초과 1.0m이하	8,750	
		1.0m초과	17,500	
		기 타 의 관	0.1m이하	1,300
			0.1m초과 0.2m이하	2,600
			0.2m초과 0.4m이하	5,200
0.4m초과 0.6m이하	7,850			
0.6m초과 0.8m이하	10,450			
0.8m초과 1.0m이하	13,100			
1.0m초과	26,200			

8.

점 용 물 의 종 류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굴착부분·어스양카·기타	일시점용한 것 기타

개 정 안

1.

점 용 물 의 종 류	
전주·공중전화·송전탑·기타 이 와 유사한 것.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

2.

점용물의종류		직경	점용료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기타 이 와 유 사 한 것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작업구(맨홀)·맨홀전력구·통신구	0.1m이하	850
		0.1m초과 0.2m이하	1,750
		0.2m초과 0.4m이하	3,500
		0.4m초과 0.6m이하	5,250
		0.6m초과 0.8m이하	7,000
		0.8m초과 1.0m이하	8,750
		1.0m초과 2.0m이하	13,100
		2.0m초과 3.0m이하	21,850
		3.0m초과	30,600
		어 스 양 카·기타 의관	어스양카·기타의관
0.1m초과 0.2m이하	2,600		
0.2m초과 0.4m이하	5,200		
0.4m초과 0.6m이하	7,850		
0.6m초과 0.8m이하	10,450		
0.8m초과 1.0m이하	13,100		
1.0m초과 2.0m이하	19,650		
2.0m초과 3.0m이하	32,750		
3.0m초과	45,850		

8.

점 용 물 의 종 류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굴착부분·기타	일시점용한 것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③ (생략)</p> <p>④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4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6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② (생략)</p> <p>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공사용 시설은 <u>건설교통부표준품셈</u>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로 한다.</p> <p>2.~3. (생략)</p>	<p>제6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1. ....<u>건설표준품셈</u>.....</p> <p>.....</p> <p>.....</p> <p>2.~3. (현행과 같음)</p>
<p>제7조 (점용료의 소액 부정수 및 반환)</p> <p>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u>500원</u>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7조 (점용료의 소액 부정수 및 반환)</p> <p>① ..... <u>5,000원</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한다.</p>
<p>제10조 (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u>점용료·부당이득금 및 과태료</u>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p> <p>1.~2. (생략)</p>	<p>제10조 (세입구분) .....<u>점용료 및 부당이득금</u>.....</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비교

현 행	개 정 안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1. ..... <u>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u> .....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55원 → 1,400원, 1955원 → 1,950원)	5. ....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설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 표의 1호에는 수도·하수도·전기·가스·송유·송열·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6.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중 <u>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u>

淨化槽 業務實態에 關한  
行政事務調查結果報告書(案)

調查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調查 期間

1996.9.13(금)—1996.10.31(목) [49일간]

調查實施對象機關

- 마포구청(시민국 청소과)
- 해당 관련업체(정일정화조공업주식회사, 마포환경산업주식회사)

調查實施 經過

가. 調查班 編成

구 분	조사 위원	대 상 기 관	조사장소	사무직원
행정사무 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 인 구 간 사 유 동 균 위 원 김순금, 박상수, 이진표, 채재선, 한대운	마포구청(청소과) 해당관련업체(정일정화조, 마포환경)	행정사무 조사특별 위원회실	김 건 재 전문위원 임 민 상 이 준 범

(다음 페이지에 계속)